-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636호

2021. 08. 31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08. 17. 양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1. 08. 20. 복지건설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

2021. 08. 31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주민복지국장)

가. 제안이유

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이용료 징수

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「건강가정

기본법」 관계 조항을 규정함(안 제1조).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(안 제9조).

○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0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신훈)

가.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고 함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①「건강가정기본법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, ② 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며, ③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안 제1조는 센터의 설치 목적을 삭제하고, 상위 법령인「건강가정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려는 것으로,

- 「건강가정지원법」 제35조제1항에는 센터의 설치·운영 목적을 ① 가정 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

개발, ③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④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음.

- 또한, 「건강가정지원법」 제35조제1항에서는 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- 따라서, 상위조문 인용을 통해 설치목적을 대신하고, 인용 조문을 구체화하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음.

【표 1】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 조문 대비표(안 제1조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**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하는**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---------- **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○ 안 제2조는 기존의 항을 하나의 항으로 합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.

【표 2】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 조문 대비표(안 제2조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명칭 및 설치 등) ① 명칭은 “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”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로 한다.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	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○ 안 제3조제1항제3호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1항에서 명시했던 센터의 설치 목적 중 하나였던 "가족문화운동"으로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, 별 문제가 없음.

【표 3】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 조문 대비표(안 제3조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능)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2. (생 략) 3. 지역사회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. ~ 6. (생 략) ② (생 략)	제3조(기능) ① -----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--- 가족문화운동 --------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○ 안 제5조제1항은 조례로서 센터의 조직을 명문화하여 세분화하였던 것을 삭제하고,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을 그대로 인용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.

【표 4】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 조문 대비표(안 제5조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조직) ① **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 등**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 ② ~ ③ (생 략)	**제5조(조직)** ① **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장과** ----------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○ 안 제6조제3항은 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

- 수당을 지급하게 될 대상을 '회의에 출석한 위원'으로 명확히 하였고, 위원에게 지급하는 용어를 '실비'에서 '수당'으로 보다 적합한 어휘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.

【표 5】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 조문 대비표(안 제6조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~ ② (생 략)	**제6조(위원회 운영)**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**운영위원회**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**실비를**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	③ **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** ---------- ----- **수당을**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.

○ 안 제9조제1항은 위탁기관의 대상을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를 전부 나열했던 방식에서 조문 인용 방식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간결성을 취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.

- 안 제9조제2항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서, 2019년 6월 11일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센터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분류되었음. 이에 따라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현행 조례 제10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.

【표 6】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 조문 대비표(안 제9조)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	제9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5.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.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.	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. ⑤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○ 안 제9조의2는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을 삭제 후 개정안 제10조에서 다시 정의하였음.

【표 7】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 조문 대비표(안 제9조의2)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 2(이용료 등) ①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이용료 등을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. ③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규칙」에 따른다.	<삭 제>

○ 안 제10조는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9조의2의 조문 내용 일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개정함.

- 안 제10조제1항은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

함. 또한, [별표]의 '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기준'을 개정하여 현재 센터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'가족돌봄사업'은 기준에서 삭제하였음.

【표 8】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 조문 대비표(안 제10조, 별표)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·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.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다.	제10조(이용료 징수 등) ① 구청장은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(이하 "이용료"라 한다)를 센터 이용자에게 징수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.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센터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1. 구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2.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정지된 경우

- 안 제10조제2항은 이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임.
- 안 제10조제3항은 신설된 조문으로서, 양천구청 사정으로 센터 운영이 중지되거나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지된 경우 이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 이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「건강가정기본법」및「사회복지사업법」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, 주민들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적합하다고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8명, 출석의원 7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